

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서 변경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0일
신고인	① 상호(명칭)	② 사업자등록번호	
	③ 성명(대표자)	④ 생년월일	
	⑤ 주소(사무실)		
⑥ 업종			
⑦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		(전화번호:)	
⑧ 착공예정일		⑨ 준공예정일	
⑩ 처분시설명 또는 재활용시설명	⑪ 시설규격 (능력)	⑫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종류	⑬ 처분 또는 재활용 예상량(톤/년)
			⑭ 방지시설명
			⑮ 시설설치비용 (백만원)
⑯ 변경사항	변경 전		변경 후
⑰ 변경사유			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제2항·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제40조제4항 에 따라

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신고 변경신고 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: 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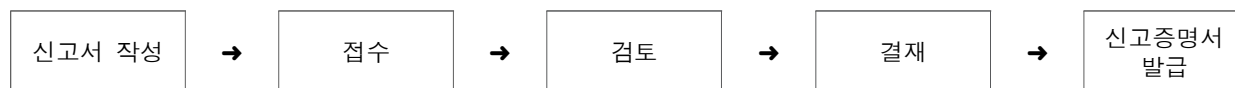
시·도지사, 유역(지방)환경청장 귀하

첨부서류	<p>1. 설치신고의 경우</p> <p>가.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</p> <p>나.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(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)</p> <p>다.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(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)</p> <p>라.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·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(「폐기물관리법」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·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</p> <p>2. 설치변경신고의 경우</p> <p>가.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</p> <p>나.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0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)</p> <p>다.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(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)</p> <p>라.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(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</p>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1. ①란은 신고인의 상호(명칭)를 적되, 수인이 공동으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명을 적습니다.
2.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(소분류)에 따른 업증명을 적습니다.
3. ⑩란은 시간당 처분 또는 재활용 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시간을 적습니다.
4. 폐기물 종류의 변경 없이 단순히 폐기물의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는 설치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.

처리절차



신고인

시·도지사, 유역(지방)환경청장

↓↑

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
검토

시·도지사